

평생교육원 규정

개정: 2022. 03. 01.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교육원은 경희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교육원은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국제캠퍼스 내에 둔다. 다만, 필요할 경우 각 지역에 교육원의 분원을 둘 수 있다.

제3조(설립목적) 교육원은 평생교육을 기본 이념으로 사회봉사 기능을 구현함으로써, 개인의 삶과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교육과정) 교육원에는 학점은행제과정, 평생교육과정, 기타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정원) 교육원의 교육과정 및 정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생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6조(수업 및 학습방법) ① 교육원은 각 과정별 특성에 맞게 주·야간, 주말 혹은 계절제 등 탄력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의 학습방법은 출석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때는 원격교육을 혼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장소) 교육장소는 본교의 시설을 이용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교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 2 장 조 직

제8조(조직) ① 교육원에는 원장, 운영위원회, 행정실을 둔다.

② 원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며 교육원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④ 행정직원은 원장을 보좌하며 교육원의 제반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교·강사) ① 학점은행제 과정 교·강사는 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교·강사 자격을 충족한 자 중에서 채용한다.

② 학점은행제 과정에는 전공별 주임강사를 둘 수 있다.

③ 주임강사는 교육원 교·강사 중에서 임명하며, 전공수업과 해당 전공 학생에 대한 학사상담을 담당한다.

④ 원장은 필요시 본교 교원이나 학점은행제 과정 교·강사 중에서 교육부장을 선임할 수 있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구성) ① 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본교 교원 중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행·재정부총장이 임명한다.
- ④ 간사는 교육원 행정실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임 위원을 임명하며, 신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3조(회의)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과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3.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강사 위촉 및 위촉제한, 해촉에 관한 사항
5. 주임강사 임명에 관한 사항
6. 강사, 수강생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기타 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 4 장 교육과정

제15조(수강신청, 등록 및 수강) 각 과정별 수강신청 및 등록, 수강 시기는 원장이 정한다.

제16조(지원자격) 교육원에 개설된 교육과정의 지원자격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단,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학력 및 연령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학습자 선발) ① 학습자는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서류 및 면접전형 등을 실시하여 학습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③ 교육과정 선발인원이 적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기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폐강처리 할 수 있다.

제18조(학습비) ① 교육원의 교육과정 학습자는 기한 내에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습자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이미 납부한 학습비 반환기준은 평생교육과정은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를, 학점은행제과정은 「평생학습과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을 준용하며, 기타교육과정은 과정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이수교과목 및 학점) 각 교육과정별 이수교과목 및 학점, 수료기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20조(성적평가) 학습자의 성적평가는 시험, 과제, 출석, 수행평가 등의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되, 그 세부사항은 과정별 특성에 따라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수료증·자격증 수여) 교육원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 5 장 교육원생의 포상 및 징계

제22조(장학 및 포상) ① 원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교육원생에게 장학금 지급이나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교육원 장학금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원장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

제23조(징계) ① 교육원생이 본 규정과 학칙을 위배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징계 할 수 있다.

② 징계의 종류는 근신, 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제24조(혜택) 교육원생에게 본교의 교육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도서관 이용 및 열람

2. 유관부서 행정서비스

제 6 장 기타

제25조(재정) ① 교육원의 재정은 수강료, 기부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교육원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교육원의 학습비 등의 수입은 본 대학교 교비 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26조(감사) 교육원의 제반행정 및 회계업무는 본교 규정에 의한 감사를 받는다

제27조(강사료 및 제 수당) 강사료 및 제 수당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행·재정부총장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

제28조(보칙) ①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학점은행제 과정 제반 사항은 본교 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부 칙

본 규정은 2014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8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0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